

 신안산대학교	기술사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(TBS Center: Technical Business Support Center)	규정 번호 3-1-10 제정 일자 2015.11.26 개정 일자 2015.11.26 책임부서/팀·계 대외협력처
--	--	--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TBS 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21세기 고도 산업사회를 선도해 나갈 우수한 기술 산업 역군 배출과 대학 인근 및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안산·시흥 스마트 허브 단지 산업체와의 산학협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대학 및 기타 산학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업무 및 기능) 센터는 아래 각 호의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술사업(Technical Business) 환경 구축 및 전문가 양성
2. 기술사업(Technical Business)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
3. 미래형 기술사업 동향 분석 및 발전방안
4. 기술사업 관련 교육, 정보, 세미나, 자문 등의 지원
5. 지역사회 공헌 및 지원
6. 안산·시흥 Smart Hub & MTV 지식기반제조/서비스산업 실무인력 양성 특성화사업 지원
7. 기타,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지원

제 2 장 조직 및 구성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원) ① 센터에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책임 연구원 및 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사무직원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사무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술사업 연구에 관한 사항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1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신안산대학교 교비회계, 산학협력단회계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총당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5 장 보 칙

제13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